이 보도자료는 2021. 4. 1.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
전문공보담당자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전화 031-5182-4253 보도자료 2021. 4. 1.(목)

제 목

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, 철저히 환수하여 국고귀속

- 수원지방검찰청(검사장 문홍성)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환가처분하여 총 122억 9,4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음
- 수원지검은 <u>국내 최초로 2018. 5. 30.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인 위 비트</u> 코인에 대한 몰수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음
-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인해 몰수된 비트코인을 환가하지 않고 보관하여 오던 중, <u>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개정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)」이 2021. 3. 25. 시행되었음</u>
- 이에 수원지검은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,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를 위해 위 <u>법률 시행 첫날인</u> 2021. 3. 25. 몰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그 대금 122억 9,4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음
- 이번 사례는 <u>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</u> <u>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</u>로, <u>향후에도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철저히</u> 추적 및 환수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차단할 예정임

¹⁾ 이하 '특정금융정보법'이라 함, 별지 관련 조문 첨부

1 가상화폐 몰수 및 환가처분 경과

- 범죄사실 요지
 - 2014.~2017.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·운영하며 122만명 상당의 회원을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· 상영하고,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여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, 도박개장방조] 등
- '17. 4. 17.~18. 비트코인 압수
 - 경찰 수사 중, 피의자가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압수
- '17. 5. 11. 피의자 구속 기소
- '17. 9. 7. 1심 선고 : 징역 1년 6월, 비트코인 몰수 불인정
- '18. 1. 30. 항소심 선고 : 징역 1년 6월, 비트코인 몰수 인정
- ※ [판결이유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재산은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하므로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
- '18. 5. 30. 대법원 판결(2018도3619) 확정
- ※ [판결이유] 비트코인은 <u>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</u>으로 볼 수 있고, 본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분이 특정되므로 <u>몰수 가능</u>함
- '21. 3. 25.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, '가상자산거래' 규정 신설
 - 수원지검,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몰수 비트코인 전량 환가처분

2 참고사항

- 2018. 5. 대법원의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 몰수 판결 이후,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몰수 및 환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임
- 최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, <u>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</u> 추적 및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임 ☑

최근해외사례

- 독일 바이에른 연방검찰, 불법 온라인서적 거래 사이트에서 압수한 가상 화폐(1,312BTC 등)를 2018. 2.~4.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매각
- 미국 연방 집행국(U.S. Marshals Service), 2014.~2017. 범죄행위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복수의 경매업체를 통해 매각, 2018년부터는 미국 연방 집행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공매한 사례도 있음

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

시행 2021. 3. 25. (법률 제17113호, 2020. 3. 24. 일부개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금융회사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- 하.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)부터 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(이하 "가상자산사업자"라 한다)
 - 1) 가상자산을 매도, 매수하는 행위
 - 2)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 - 3)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- 4)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 - 5) 1) 및 2)의 행위를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 - 6)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2. "금융거래등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- 라.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 하목 1)부터 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"가상자산거래"라 한다)
- 3. <u>"가상자산"</u>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